

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

준비물

- 수험표, 규정 신분증

시험 응시 관련

- 신분증의 사본 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수험표에 사진이 없거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수험표 상의 성명과 신분증 상의 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완료시간 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,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(본인이 신청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)

<입실 및 퇴실시간(현지시간 기준)>

구분	교시	영역	*중국 등			일본			기타국가			시험 시간 (분)
			입실 완료 시간	시작	종료	입실 완료 시간	시작	종료	입실 완료 시간	시작	종료	
TOPIK I	1교시	듣기 읽기	08:40	09:10	10:50	09:30	10:00	11:40	09:10	09:40	11:20	100
TOPIK II	1교시	듣기 쓰기	11:50	12:20	14:10	12:30	13:00	14:50	12:20	12:50	14:40	110
	2교시	읽기	14:30	14:40	15:50	15:10	15:20	16:30	15:00	15:10	16:20	70

※ 중국 등: 중국(홍콩 포함), 몽골, 대만, 필리핀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

-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<B형 국가의 경우> 응시자는 문제지의 유형(홀수·짝수)과 답안지에 마킹한 문제지 유형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. (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립니다.)
-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, 질병이나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퇴실할 수 있습니다. (중도 퇴실한 경우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적처리가 되지 않음)
-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TOPIKⅡ의 경우, 1교시 결시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중도퇴실자,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.
-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며, 응시자는 성적 발표일에 영문명·사진 등 접수정보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, 이상이 있는 경우 성적발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현지

시행기관으로 지원자 정보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 (지원자 본인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정정 불가)

답안지 작성 관련

-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 - 듣기 중에는 듣기 답안만, 읽기/쓰기 중에는 읽기/쓰기 답안만 작성, 듣기 평가의 경우 별도 마킹 시간 없음
-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답안지 위·아래의 타이밍 마크(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-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답안지 작성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 사용가능합니다.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듣기/읽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 (불완전한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)
- 쓰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,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면 됩니다.
- 개인이 소지한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며,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-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합니다.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,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.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,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문제 무단 배포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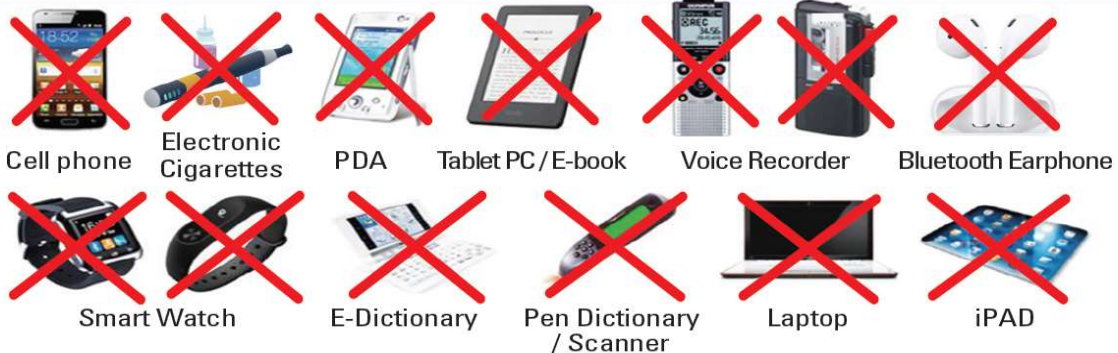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, 복제, 배포할 수 없으며,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, 배포한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<고등교육법 시행령> 및 <한국어능력시험(TOPIK) 기본운영규정>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
반입 금지 물품

- 전자·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
-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응시자 소지 중 적발된 경우에는 <고등교육법 시행령> 및 <한국어능력시험(TOPIK) 기본운영규정>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소지 불허 물품

- 응시자는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(모든 전자통신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는 후, 반드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)



- ▶ MP3 플레이어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'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', 노트북,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(에어팟 등) 등 위 그림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**모든 전자통신기기는 시험실에서 소지 불허 물품이므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**
- ▶ 시험실 감독관이 모든 전자통신기기를 제출할 것을 고지한 이후에도 전자통신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, 이 경우 모든 **전자통신기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**

부정행위자 처리 안내

구분	부정행위 내용	근거
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	▶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	시행령
	▶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	
	▶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	
	▶ 녹음,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	기본운영규정
	▶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	
	▶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	
	▶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 주려고 시도하는 행위	
	▶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(말하기 평가만 해당)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	
	▶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(단,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·관리 중인 경우 제외)	
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	▶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	시행령
	▶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	
	▶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	
	▶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	기본운영규정
	▶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	
	▶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	
	▶ 문제지,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(말하기 평가만 해당)가 아닌 곳에 문제나 답안을 적는 행위	
	▶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	
	▶ 시험문제, 답안 및 제공된 메모지(말하기 평가만 해당) 촬영, 음원 녹음, 기타 방법으로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	
	▶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·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	
	▶ 성적증명서를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	
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	▶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	시행령

※ 자세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(www.topik.go.kr) 참고

-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의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로 송달됩니다.
-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분 사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이메일(topik@korea.kr)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연락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최종 부정행위 처분은 전자문서로 진행되며, 전자문서는 적발된 자의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로 송달됩니다.